



<노동시장 개혁 이슈 리포트 ②>

노동개혁 쟁점 2 -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정년연장법) 개정으로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사업장과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이 의무화됨.
- 법안 개정 이후 점점 고령화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속에서 정년연장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인건비가 더욱 가중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청년 실업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일정연령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을 조정해 임금부담을 줄이고, 그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채용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음.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임. 임금피크제는 대개 인건비 부담 경감, 인사 적체 해소,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되는데 미국·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

- 근로기준법 제 94조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점점 낮아지므로 근로 조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고 있음. 다시 말해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다면 이는 실질적인 임금삭감이라는 주장임.
-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그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즉, 정년 연장으로 사실상 고용기간 연장이라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기존 정년 시점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감액이 보편적 수준이라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 2014년 기준으로 정년제 운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4% 수준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이 높으며, 특히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13.4% 수준으로 나타남.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72.2%는 조만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노사합의가 어렵기 때문임.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감액률, 고용연장기간, 대상자등 민감한 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다 노조가 도입 자체를 반대할 경우 정부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임.
- 합리적인 감액률의 설정이 어렵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임. 임금피크제는 고용의 연장과 임금의 감액을 교환하는 일종의 거래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생산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피크연령, 임금 및 직무조정 방법 등이 세밀하게 반영되어야 함. 감액률은 회사나 직무 및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감액률을 설정하는 방식은 근로자 전체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 현재 노동계와 사용자·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 시행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도 아직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지부진한 실정임. 정년연장이라는 과실이 이미 노동자에게 돌아간 상황에서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고용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임.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효과분석, 2015년 3월 19일 보도자료
이영면 외, 임금피크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2012.08